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293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전종덕 · 오세희 · 정혜경
임미애 · 송옥주 · 한창민
김종민 · 용혜인 · 정춘생
이수진 · 윤종오 · 손 솔
전진숙 · 송재봉 · 김 윤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수온 상승, 해양생태계 변화, 수산·양식업 피해 등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 전반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,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,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절실함.

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,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,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실태조사, 영향 및 취약성 평가, 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위한 규정은 없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해양수산발전기본계

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등).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5조(국가 등의 기본책무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| <p>제5조(국가 등의 기본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|
| <p>제6조(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) ① (생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6. ~ 9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| <p>제6조(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</u> 7. ~ 10. (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|